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고,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에 두었던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혁신지원과는 그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하부조직의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6항 중 “지역특구과”를 “제조혁신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특구과장”을 “제조혁신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정책의 수립·시행
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6.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표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성장유망기업의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역 확산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직무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공장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기관 간 협력
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에 대한 정보보안 지원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초고속 통신망 기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보급사업 연계
에 관한 사항
 19. 초고속 통신망 기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진에 관한
사항
 20. 로봇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스마트화에 관한 사항
 21.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및 클러스터를 통한 신사업 기획에 관한 사
항
- 제10조제5항 중 “제53호”를 “제6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술보
호과 및 인력육성과”를 “기술보호과, 인력육성과 및 디지털혁신지원과”
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⑲ 디지털혁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의 수립·시행
4.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선진기술 동향조사 및 소개
5. 중소기업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및 핵심투자 분야 선정에 관한 사
항
6.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법령검토 및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
항
7. 중소기업 제조혁신 문화 확산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제조혁신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 기술개발 정책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솔루션 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가공·분석·유통·활용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공정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에 대한 수출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18.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 조성 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 통합 정보화 경영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의 생산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뿌리산업 분야 고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23.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4.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조혁신 디지털 전환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9조제2항 중 “기획총괄과 및 규제자유특구과”를 “특구총괄과 및 지역특구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총괄과장”을 “특구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규제자유특구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지원
14. 규제자유특구계획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15. 규제자유특구계획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7. 규제자유특구 관련 규제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검토

18.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안전 상정에 관한 사항

19. 규제자유특구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0. 규제자유특구의 관리·감독 및 운영의 평가

21.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후관리

22.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의견 조정

23. 규제자유특구 운영 관련 규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

24. 규제자유특구 관련 연계지원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자유특구과장”을 “지역특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의 추진

2.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3. 취약·낙후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마련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6.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
 7.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성과평가 업무
 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운영
 10.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자유평화단애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중 총계 “483”을 “482”로 하고, 일반직 계 “477”을 “476”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83”을 “482”로 하고, 일반직 계 “477”을 “476”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7 1) 조직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정책실 제조혁신지원과

별표 7 1)의 정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4급 또는 5급”으로 하고, 같은 란의 2022년 9월 30일까지란 중 “2022년 9월 30일”을 “2024년 9월 30일”

로 하며, 같은 표 2) 조직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창업벤처혁신실 디지털혁신지원과

별표 7 2)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9월 30일”을 “2024년 9월 30일”로 하고, 같은 표를 삭제한다.

별표 8 1. 규제자유특구기획단(준속기한: 2022년 8월 31일)을 다음과 같이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2”를 “1”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2”로 한다.

1. 규제자유특구기획단(준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조(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 확단) ①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 신기확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한다.</u> <u>②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 확단에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 혁신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u> <u>③ 제조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u> <u>1.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중 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 립 · 시행에 관한 사항</u> <u>2.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 원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 한 사항</u> <u>3.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의 수립 · 시행</u> <u>4.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범 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의체 운영</u>	<u><삭 제></u>

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지
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선
진기술 동향조사 및 소개
7. 중소기업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및 핵심투자 분야 선정
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법
령검토 및 제도의 연구·개선
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사
업에 대한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제조혁신 문화 확
산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 통신망 기반 중소기
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보급
사업 연계에 관한 사항
12. 초고속 통신망 기반 중소기
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
진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산업단지 지원과제
발굴 및 연계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과 일

- 터혁신 정책 연계 및 성과분
석 등에 관한 사항
15. 일터혁신 연계형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성공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
간
17.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에 대
한 정보보안 지원에 관한 사
항
18.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표준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특허 확보지원 및 사업화 방
안 마련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제조혁신 인력양
성 정책에 대한 연계·조정
에 관한 사항
21.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
기술개발 정책에 대한 연계·
조정
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기술
개발 결과물과 스마트공장 보
급사업과 연계에 관한 사항
23.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고

도화 정책과의 연계 지원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규
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 제조혁신 성장유
망기업의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

④ 제조혁신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
한 사항

2.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
한 사항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
한 사항

4.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정책의
수립·시행

5. 로봇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수준확
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에

-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역
확산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직무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공장 관련 중소기업
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기
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솔루션 거래 활성화 지
원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가공
· 분석 · 유통 · 활용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
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에 관
한 사항
15. 중소기업 공정혁신의 지원
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7.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
에 대한 수출역량 강화에 관

<u>한 사항</u> <u>18.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u> <u>19.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u> <u>20.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 조성</u> <u>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u> <u>21. 중소기업 통합 정보화 경영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u> <u>22.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u> <u>23. 중소기업의 생산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u> <u>24. 중소기업 뿌리산업 분야 고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u> <u>25.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 <u>26.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u>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 ⑤ (생략) ⑥ 중소기업정책실에 정책총괄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과, 일자리정책과, 정책통계분석과, 정책평가과, 제도약정책과, 미래산업전략팀,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판로정책과, 국제협력과, 지역혁신정책과, 지역기업육성과 및 지역특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⑦ ~ ⑱ (생략)

⑲ 지역특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의 추진
2.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3. 취약·낙후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 제조
혁신지원과-----

-----.

⑦ ~ ⑱ (현행과 같음)

⑲ 제조혁신지원과장-----
-----.

1.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u>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마련</u>	<u>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정책의 수립·시행</u>
5. <u>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u>	5. <u>중소기업 스마트공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u>
6. <u>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u>	6. <u>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표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7. <u>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u>	7. <u>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성장유망기업의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u>
8. <u>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성과평가 업무</u>	8. <u>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9. 「<u>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u>」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운영	9. <u>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10. <u>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u>	10. <u>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1. <u>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역 확산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2.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직무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4. 스마트공장 관련 중소기업 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기 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고도 화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6.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에 대 한 정보보안 지원에 관한 사 항</u>
<u><신 설></u>	<u>17.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8. 초고속 통신망 기반 중소기 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보급 사업 연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9. 초고속 통신망 기반 중소기 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 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0. 로봇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스마트화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1.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및 클 러스터를 통한 신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u>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 ④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 ④

(생략)

⑤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8호 및 제29호부터 제5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창업벤처혁신실에 창업정책총괄과, 기술창업과, 청년정책과, 창업촉진과, 창업생태계조성과, 벤처혁신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회수관리과, 기술정책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 및 인력육성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⑦ ~ ⑮ (생략)

<신설>

(현행과 같음)

⑤ -----

--- 제64호-----
-----.

⑥ -----

----- 기술보호과,
인력육성과 및 디지털혁신지원
과-----

--.

⑦ ~ ⑮ (현행과 같음)

⑲ 디지털혁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중
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
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
원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
한 사항
3.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의

수립 · 시행

4.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선진기술 동향조사 및 소개
5. 중소기업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및 핵심투자 분야 선정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법령검토 및 제도의 연구 · 개선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제조혁신 문화 확산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제조혁신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연계 · 조정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 기술개발 정책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솔루션 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가공 · 분석 · 유통 · 활용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에 관

한 사항

14. 중소기업 공정혁신의 지원
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
에 대한 수출역량 강화에 관
한 사항

17.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대
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18.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 조
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 통합 정보화 경영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의 생산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뿌리산업 분야 고
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23.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19조(규제자유특구기획단) ①
(생략)

②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기획
총괄과 및 규제자유특구과를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
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
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4.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소
관 제조혁신 디지털 전환 관
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
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9조(규제자유특구기획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특구총
괄과 및 지역특구과-----

-----.

③ 특구총괄과장-----
-----.

1. ~ 12. (현행과 같음)

13. 규제자유특구 관련 광역지
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계
획의 수립 지원

14. 규제자유특구계획 관련 광
역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15. 규제자유특구계획별 분과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및

	<u>관계부처 협의·조정</u> 에 관한 사항
<u><신 설></u>	17. <u>규제자유특구 관련 규제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검토</u>
<u><신 설></u>	18. <u>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9. <u>규제자유특구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0. <u>규제자유특구의 관리·감독 및 운영의 평가</u>
<u><신 설></u>	21. <u>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후관리</u>
<u><신 설></u>	22. <u>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의견 조정</u>
<u><신 설></u>	23. <u>규제자유특구 운영 관련 규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u>
<u><신 설></u>	24. <u>규제자유특구 관련 연계지원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5.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의 소

④ <u>규제자유특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규제자유특구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지원</u> 2. <u>규제자유특구계획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u> 3. <u>규제자유특구계획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4. <u>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u> 5. <u>규제자유특구 관련 규제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검토</u> 6. <u>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회회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u> 7. <u>규제자유특구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u>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u> ④ <u>지역특구과장-----</u> -----. 1. <u>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의 추진</u> 2. <u>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대한 종합·조정</u> 3. <u>취약·낙후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u> 4. 「<u>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u>지역특화발전특구</u>”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마련 5. <u>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u> 6. <u>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u> 7. <u>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u>
---	--

8. <u>규제자유특구의 관리·감독 및 운영의 평가</u> 9. <u>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후관리</u> 10. <u>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의견 조정</u> 11. <u>규제자유특구 운영 관련 규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u> 12. <u>규제자유특구 관련 연계지원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3. <u>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u> ⑤ (생략) <u><신설></u>	8. <u>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성과평가 업무</u> 9. 「<u>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u>」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운영 10. <u>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삭제></u> <u><삭제></u> <u><삭제></u> ⑤ (현행과 같음) ⑥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제25조제3항에 따라 <u>규제특구자유기획단에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	--

신 · 구정원대비표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483</u>		<u>482</u>	-1	
	.		.		.		
	.		.		.		
일반직 계			<u>477</u>		<u>476</u>	-1	
고위공무원단			<u>17</u>		<u>16</u>	-1	
	.		.		.		
	.		.		.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483</u>		<u>482</u>	-1	
	.		.		.		
	.		.		.		
일반직 계			<u>477</u>		<u>476</u>	-1	
고위공무원단			<u>17</u>		<u>16</u>	-1	
	.		.		.		
	.		.		.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8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중소기업정책실 제조혁신지원과	1명 (4급 또는 5급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2) 창업벤처혁신실 디지털혁신지원과	6명 (5급 4명, 6급2명)	2024년 9월 30일까지
3) 창업벤처혁신실 청년정책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중소벤처기업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5항, 제19조의
2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규제자유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 <u>1. 규제자유특구기 획단(존속 기한: 202 2년 8월 3 1일)</u>	· <u>1. 규제자유특구기 획단(존 속기한: 2 022년 12 월 31일)</u>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 · <u>2</u>	· · <u>1</u>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u>	<u>2</u>	+1
· ·	· ·	· ·	